

「2025년 지식재산 거래 유공포상」 공고

「2025년 지식재산 거래 유공포상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5년 9월 8일
특허청장

1. 포상 개요

- (목적)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·단체를 포상하여 국민의 인식제고, 우수 거래인·단체의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
- (주최/주관) 특허청/한국발명진흥회
- (대상) 지식재산 거래 관련 활용·공급하는 개인 또는 단체
- (포상규모) 3점 (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1점, 특허청장 표창 2점)
* 포상금 수여 예정, 상황에 따라 포상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
- (포상부문) 2개 부문

분야	부문	대상
지식재산 거래	활용 유공	· IP 거래를 통한 기술을 도입하여 활용한 기관기업 또는 임직원
	공급 유공	· 산·학·연의 기술·IP를 공급하는 기관 또는 기술이전 담당자

- (자격기준) 표창추천일 기준 수공기간 3년 이상
 - 개인표창 : 표창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실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자
 - 단체표창 : 표창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3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단체
- (시상식) '2025년 개방형 혁신 컨퍼런스(가칭)'에서 수여 (11.21 예정)

2. 포상 신청

- (신청기간) '25. 9. 8.(월) ~ 9. 24.(수) 18시
- (신청방법) 신청서류 한글(hwp)파일 및 증빙서류 스캔(pdf)파일 모두 이메일로 제출(ipto@kipa.org)
- (신청서류) 공적조서,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,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(붙임 1 참조)*, 거래업무 수행실적(별도 제출양식 첨부)**

* www.kipo.go.kr / www.kipa.org → 신청서 양식 다운 → 작성 후 제출

** '거래업무 수행실적' 관련 '별도 제출양식(엑셀)'과 '증빙자료'는 함께 제출

3. 포상 심사

- (추진일정) 공개모집 → 포상추천심사위원회(한국발명진흥회)
→ 공적심사위원회(특허청)를 거쳐 표창추천 대상 선정

* 「2025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», 「특허청장 표창 및 후원명칭 운영지침」 등 관련지침에 따라 표창 대상의 추천기준 검증 및 선정·추천

< 일 자 >	< 주요 내용 >	< 세부 내용 >
○ 9.8.~9.24.	포상 신청공고 및 접수 (특허청, 발명진흥회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기관 홈페이지, 관계 기관 및 회원사 대상홍보 등을 통한 발굴
○ 10.1. 예정	포상추천심사위원회 (발명진흥회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심사위원 : 지식재산거래 종사자 및 발명유관단체 인사, 산학연 기술이전 부서장, 교수 등 5~7인 ■ 심의내용 : 심사기준에 따라 분야별 추천순위 결정(특허청에 추천) * 포상 추천제한 대상자 조사
○ 10월 중순	공적심사위원회 (특허청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위원장 : 국장급 이상 ■ 심사위원 : 과장급 이상 5~10명 ■ 심의내용 : 분야별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선정 및 정부포상 이하 포상자 결정
○ 10월 말	포상대상자 추천 (특허청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산업통상자원부로 정부포상 대상 추천
○ 11.21. 예정	지식재산 거래 유공포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2025년 지식재산 거래 유공포상 수여 * 개방형 혁신 컨퍼런스에서 수여 예정

※ 포상규모 및 추진일정은 대·내외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- **(심사기준)** 거래 건수, 거래 금액, 거래 기여도, 공적기간 등 세부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하여 총점 순으로 선발

< 세부 심사항목 (기준시점 : 2022. 1. 1.~2024. 12. 31.) >

심사항목	거래건수	거래금액	거래 기여도	공적 기간	합계
배점	30점	30점	30점	10점	100점

- ① 거래건수 : 최다 거래합산 건수를 만점으로, 3점 씩 감점, 최저점 10점
- ② 거래금액 : 최고 거래합산 금액을 만점으로, 3점 씩 감점, 최저점 10점
- ③ 거래 기여도 :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마련, 우수사례 창출 등 공적에 대한 평가
- ④ 공적기간 : 표창추천일 기준 심사 대상의 해당분야 경력

- **(추천제한)** 「정부포상 업무지침」, 「2025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」, 「특허청장 표창 및 후원명칭 운영지침」에 따른 추천 제외 대상 (붙임2 참조)

5. 문의처

접수기관	접수처	문의 전화
한국발명진흥회	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	02-3459-2766

붙임1 신청 서류

[서식1]

공적조서(포상)

(앞쪽)

성 명	(한자)		
주 민 등 록 번 호	군번(군인인 경우)		
	국적(외국인인 경우)		
주 소			
직 업	소 속		
직 위	직 급 · 계 급		
추천 훈격(勳格)	미기재	추 천 순 위	미기재
공 적 분 야	공급유공() 활용유공()	공 적 기 간	
공적 요지(70자 이내)			
조사자			
소 속			
직위(직급·계급)	성 명	(서명 또는 인)	
<p>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추천관(추천인) 직위 성명</p>			
			관인

주요 경력

연 월 일	이력사항

과거 포상기록(훈장·포장·표창별로 기록)

수여일(연 월 일)	

공적 내용

구 분	실 적
거래 건수	00 건
거래 금액	000 백만원

- ※ 거래건수 및 거래금액에 대한 계약서 사본, 수행실적(별도 엑셀 첨부파일 참조) 별도 제출 必
- ※ 경상기술료의 경우 입금증 사본 추가 제출 必

작성예시 (제출 시 본 표는 삭제)

- ※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.
- ※ 공적사항 작성내용이 심사에 반영되므로 발명기술을 단순나열식으로 작성하지 마시고 공적내용에 대하여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.
- ※ 객관적인 사실, 수치를 활용하여 서술식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.
- ※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은 내용은 심사에 반영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공 적 내 용

○ (제목)

- (내용).....
.....
.....

- (내용)

○ (제목)

- (내용).....
.....
.....

- (내용).....
.....
.....

[서식3] ※ 신청자가 “공무원” 인 경우만 작성

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

① 소속기관		② 직 위		③ 직 급	
④ 성 명	한글		⑤ 주민등록번호	- (만 세)	
	漢字		⑥ 군 번(군인)	< 군인의 경우에만 작성 >	
⑦ 구 분	<input type="checkbox"/> 재직자 <input type="checkbox"/> 정년퇴직자 <input type="checkbox"/> 명예퇴직자 <input type="checkbox"/> 의원퇴직자 <input type="checkbox"/> 기 타				

구 분	재 직 기 간	⑫ 특 정 직	~ (년 월 일)
⑧ 일 반 직	~ (년 월 일)	⑬ 교 원	~ (년 월 일)
⑨ 별 정 직	~ (년 월 일)	⑭ 군 인	~ (년 월 일)
⑩ 기 능 직	~ (년 월 일)	⑮ 군 무 원	~ (년 월 일)
⑪ 고 용 직	~ (년 월 일)	⑯ 기 타 ()	~ (년 월 일)
합 계 ㉑		년 월 일	

⑰ 제외기간	휴직 : ~ (년 월 일)	직위해제 : ~ (년 월 일)	
합 계 ㉒		년 월 일	

⑱ 실 재직기간 (㉑ - ㉒)	년 월 일	⑲ 추천훈종	< 공 란 >
--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	---------

⑳ 징계, 형벌	종 류	일 자	㉑ 과거포상 (모범, 총리 표창 이상)	포 상 명	수여일자
㉒ 작 성 자 (인사담당자)			㉓ 확 인 자 (인사담당관)		
직 급	성 명	(인)	직 급	성 명	(인)

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.

2025년 월 일

㉔ 기 관 명 :

직인

붙임2 추천 제한

□ 「2025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」에 의한 추천 제한

가. 공무원포상

* 공공기관,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·직원도 적용

- 1) 표창추천일 기준, 직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자
- 2) 휴직중인 자
- 3)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,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 (정부포상지침 중 3.공무원포상 부분과 동일), 수사 중인 자
- 4)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
- 5)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
- 6)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- 7)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포상이 부적합한 경우

※ 예외적으로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(재직공무원)

-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
 - 다만, 주요비위(음주운전, 금품·향응수수, 공금횡령·유용, 성폭력, 성매매, 성희롱)로 인한 경우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

※ 예외적으로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(퇴직공무원)

- 징계처분이 사면된 경우,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
 - 다만, 주요비위(음주운전, 금품·향응수수, 공금횡령·유용, 성폭력, 성매매, 성희롱)로 인한 경우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
 - 재직 중 3회 이상의 징계처분(불문경고 포함)을 받은 자는 추천 제한

나. 국민표창

1) 표창추천일 기준, 직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

2)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(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)

* 다만,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

3)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

가)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

*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(동일사건번호)는 1회로 처리

나)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포함)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

* 다만,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

4)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“의견거절”, “부적정”, “한정”인 상장 회사의 대표자와 임원

5)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(개인)

가)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「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」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

- 나)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「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」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
- *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

- 6)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
- 7)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- 8)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
 - *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포함(정부포상지침 중 2.일반국민 포상과 동일)

다. 단체표창

- 1) 표창추천일 기준, 최근 2년 이내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
- 2)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
- 3)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(민간단체에만 적용)
 - * 다만,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
- 4)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(민간단체에만 적용)
 - 가)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)
 - *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(동일사건번호)는 1회로 처리
 - 나)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)

- * 다만,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
- 5)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“의견거절”, “부적정”, “한정”인 상장회사
- 6)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법인(단체)
 - * 다만,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
- 7) 「근로기준법」 등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(단체)
 - 가)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「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」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
 - 나)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「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」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
 - *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
- 8)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- 9) 기타 사회적 물의

※ 산재명단공표, 불공정행위, 임금체불사업주 조회기관

- 산재명단공표: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(☎ 044 - 202 - 7693)
- * [고용부 홈페이지\(www.moel.go.kr\)](http://www.moel.go.kr) → 정보공개 → 사전정보 공표 목록 → 산재예방/산재보상 →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(pdf 파일)를 참고해 자체 확인
- 불공정행위: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(☎ 044 - 200 - 4127)
- * [공정위 홈페이지\(www.ftc.go.kr\)](http://www.ftc.go.kr) → 심결/법령 → 범위반사실조회 → 사업장명 검색
- 임금체불사업주: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(☎ 044 - 202 - 7537)
- * [고용부 홈페이지\(www.moel.go.kr\)](http://www.moel.go.kr) → 정보공개 →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→ 사업장명 또는 성명 검색

※ 회계법인의 감사의견

- 최근 1년 이내 감사보고서 중 “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” 부분 확인

□ 「**특허청장 표창 및 후원명칭 운영지침(2016.12.19.)**」에 의한 추천 제한

- 수사 중이거나,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
-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(불문경고 포함)을 받은 자
 - 다만, 경징계(감봉·견책)가 사면되었거나,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표창 추천가능
 - 다만, 주요비위*를 저지른 경우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
- * 금품·향응 등 수수 및 제공, 횡령·배임·절도·사기·유용, 성폭력, 성매매, 성희롱, 음주 운전,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·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위반
- 징계절차 진행 중이거나 기타 공·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청장 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(단체 포함)
 - * 단, 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(범죄경력조회·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)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고려, 민원 야기 등에 대하여 신중히 조사하여 추천하여야 함
- **(재표창 금지)**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은 1년 이내에 다시 받을 수 없으며, 단체의 경우는 최근 2년 이내에 동일 분야에 대하여 다시 받을 수 없음
- **(이중표창의 금지)**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음

□ 「**정부포상 업무지침**」에 의한 추천 제외

- 재포상 금지기간,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, 「상훈법」 및 「정부 표창 규정」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,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, 「공정거래관련법」 위반 법인 및 그 임원,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 제공된 체불사업주, 「국세기본법」 제85조의5, 「관세법」 제116조의2 또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40조에 따라 고액·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,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또는 법인 등

* 행정안전부 상훈포털시스템(www.sanghun.go.kr), 2024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참고